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96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구자근의원안)	3

I. 개요

1.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96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21.

(3) 회 부 일 : 2025. 4.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 등 일정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신고·확정신고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불가능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 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구자근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50조의2) ☐ 납부유예 대상 -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 <u><신 설></u>	☐ 납부유예 대상 확대 ☐ 납부유예 대상 - (현행과 같음) - <u>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u> ☐ 부 칙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구자근의원안 2025. 4. 21. 발의(의안번호 9969)

☐ 개정안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0조¹⁾에서는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에 대

1) 「부가가치세법」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한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사업자는 원재료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영세율을 적용²⁾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음.

같은 법 제50조의²³⁾에서는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때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하는 경우 최소 40일 이상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⁴⁾될 수 있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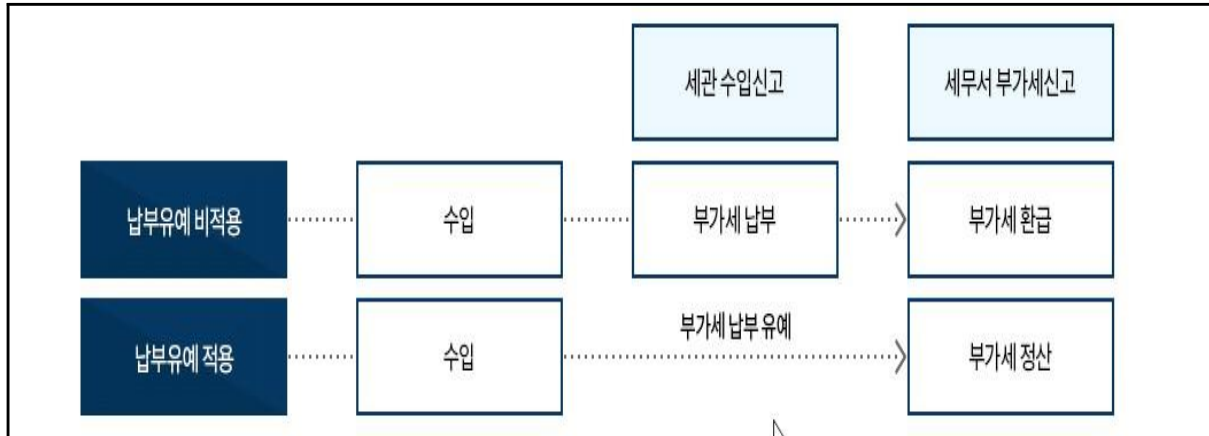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중견사업자”라 한다)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중소·중견사업자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개요]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발췌

이러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2015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6년 7월부터 실시되었음.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연혁]

제정 · 개정일	주요내용
2015. 12. 15.(법률 개정) (2016. 7. 1.분부터 적용)	-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 중소기업(제조업): 수출액 비율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2017. 2. 7.(대통령령 개정) (2017. 2. 7. 시행)	- 중견기업으로 적용 확대 - 중소기업: 수출액 비율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중견기업(제조업): 수출액 비율 50% 이상
2021. 2. 17.(대통령령 개정) (2021. 2. 17. 시행)	- 적용대상 확대 - 중소기업: 수출액 비율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액 비율 30% 이상

또한, 수출액 비율·규모 등 납부유예 적용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

4) 일반적인 수입부가가치세의 경우 예를 들어, 12월 17일부터 1월 16일 사이 수입신고 수리분에 대해서 1월 31일 부가가치세·관세 납부(월별납부) →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1개월 단위 조기환급) → 3월 10일 환급됨. 즉,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일로부터 40일 정도 경과 후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으나, 납부유예를 받는 경우 40일 가량 일찍 환급받는 효과가 나타난다.

으로 정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수출액 비율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 실시되었고, 2017년 2월부터는 수출액 비율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21년 2월부터는 수출액 비율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및 수출액 비율 3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침체나 산업별 불황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한 기업들은 규모를 불문하고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부도나 파산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일시적으로나마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

첫째, 최근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수출기업들이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에너지, 금속 등 23개 원자재 가격이 반영된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Bloomberg Commodity Index, BCOM)⁵⁾가 2024년 5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⁶⁾하는 등 수출기업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수입부

5)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는 전 세계 주요 원자재 시장을 대표하는 종합 지수로, 에너지·금속·농산물 등 23개 상품 선물 계약으로 구성됨.

가가치세를 선납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둘째,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장려를 목적으로 수출기업에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시기를 조정⁷⁾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음.

수입부가가치세로 인한 금융비용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한 비율로 발생하는 것이고, 수입부가가치세와 유사하게 관세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⁸⁾에 따라 사후정산 제도(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관세를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관하고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액과 납부할 금액을 상계처리하는 제도)⁹⁾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 제

6) 한국무역협회, “금·구리 값 역대 최고…국제 원자재 지수 16개월만에 가장 높아”, 2024. 5. 20.

7) 수출기업은 수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임.

8)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제3조),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제9조) 환급대상수출에 제공되는 경우(제4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제14조)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① 세관장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하 “일괄납부기간”이라 한다)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이하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일괄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3조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3조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

도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셋째,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세수 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은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궁극적으로 상품 가격에 반영되기 마련인데, 수출기업의 경우 ‘국제 경쟁 시장의 가격수용자’로서 수출가격 인상 여지는 제한적인 반면, 내수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 여력이 크기 때문임.

특히, 원유와 같은 주요 원자재는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품목으로, 수입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인 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법령에서도 개정안에서 제시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

당하는 자

제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①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그 정산 결과를 통지(이하 “정산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6조(환급금의 지급)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환급신청하여 결정된 환급금은 그 환급금 결정일이 속하는 일괄납부기간별로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날까지 지급을 보류한다.

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기업규모와 상관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음.

현행 「국세징수법」 제13조¹⁰⁾에서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납부기한 연장, 세액 분할 납부, 납부지연 가산세 미부과 등을 통해 납세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도 현재 재난·재해, 구조조정·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¹¹⁾하고 있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을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까지 확대할 경우 과도한 혜택 적용에 따른 사

10)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1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업자 간 형평성¹²⁾과 대상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선별기준, 유예 후 고의 미납에 따른 탈루우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둘째, 납부유예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수 감소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세입 시점을 미루는 효과를 가져와 재정 흐름에 변동성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정부는 조세 수입의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연간 재정 운용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대기업을 대규모로 납부유예를 신청할 경우 단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유예세액이 누적되어 일시적인 재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른 재정 지출의 조정이나 보완적 차입이 불가피해질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수입납부유예제도의 확대는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도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경영상의 심각한 위기’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세, 관세 모두 납부기한 유예가 가능하고, 수입 부가

12) 예를 들어, 개정안에 따라 4월 수입분 부가가치세를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유예한 경우 7월 확정신고 시 정산하여야 하나,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9개월 간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최대 1년간 납부이연 효과가 발생함.

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수출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7
